##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



[시행 2021. 1. 7.] [조례 제7874호, 2021. 1. 7., 제정]

서울특별시교육청(중등교육과), 02-3999-528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원격수업"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,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,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.
- 2. "학교"란 ? 유아교육법?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? 초·중등교육법?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 - 1.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 - 2.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·평가
  - 3.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
  - 4.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·운영
  - 5.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
  - 6.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  - 7.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,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⑤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·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원격수업 지원사업)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
- 2.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
- 3. 온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보급 사업
- 4.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·보급 사업
- 5.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
- 6.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
- 7.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
- 8.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(연구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?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? 에 따라 연구·시범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연구·시범학교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- 제9조(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  - 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 - 3.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  - 4. 제8조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
  - 5.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-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)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 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12조(표창)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?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?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 <제7874호, 2021.1.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